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13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부족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급자격의 조사, 확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

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보장급여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포괄하는데, 급여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의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수급여부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